

■ 최신 판례 ■

버스기사의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었다면 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도 무효라고 본 사례

[대상판결 : 광주고등법원 2019. 7. 3. 선고 2019나20206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

교통사고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고속버스 회사가 내린 당연 퇴직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, 이후 이의제기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 퇴직 사유가 없어서 당연퇴직통보는 무효라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.

A 씨는 2004년에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B 회사에 입사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습니다. 그런데 A 씨는 2017년 8월에 울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). 이에 B 회사는 2017년 9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정지(정직) 5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A 씨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.

이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11월 이 사건 사고로 A 씨의 벌점이 14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. 이에 B 회사는 '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'는 취업규칙 조항(이하 '이 사건 당연퇴직조항')을 근거로 A 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후 A 씨는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신청을 했고,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2월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벌점을 110점으로, 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(110일)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법원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, A 씨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규정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

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.

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'승무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'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'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승무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운전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'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그런데 B 회사는 면허 취소일에 곧바로 당연퇴직처분을 내린 점, 승무정지 기간에는 A 씨의 임금 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B 회사가 서둘러 당연퇴직처분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실제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, B 회사가 A 씨에게 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